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0일
-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현행화를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발명의 신고 및 직무발명 구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구 승계 발명 및 발명자의 출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구유평특허권 등록 및 처분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보상금 및 발명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실용신안,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5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공무원 등의 직무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영등포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발명’ 및 ‘발명자’의 정의에 영등포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도 포함 함.
 - 안 제3조, 제4조는 발명의 신고 및 직무발명 구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해 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 안 제5조, 제6조는 구 승계 발명 및 발명자의 출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 발명자는 구 승계 여부 통지를 받기 전에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7조, 제8조는 구유평특허권 등록 및 처분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

청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는 구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등록을 하고 구유평특허권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상금 및 발명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발명자에게 구유평특허권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등록 보상금과 특허권 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처분보상금을 정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과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4조, 제15조는 실용신안·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직무발명의 구 승계 결정, 보상금 지급, 직무발명 장려 등을 심사하도록 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
----------	----

발의년월일: 2022년 11월

발 의 자: 이규선·차인영·최봉희

이성수·우경란 의원(5인)

1. 제안이유

직무발명의 근거법령인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련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등의 현행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자유발명", "가승계", "직무발명상황보고" 등에 관한 내용 삭제

다. 그 밖에 근거·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영한 현행화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른 조문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특허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 인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영등포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구유평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평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평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평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구 승계)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구의 승계(이하 “구 승계”라고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구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구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⑤ 구청장으로부터 구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5조(구 승계 발명의 출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구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구유평특허권의 등록)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의 원칙 등) ① 구유평특허권의 처분의 원칙, 처분 방법, 등록 전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평특허권”은 “구유평특허권”으로, “특허청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구유평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평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권리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보상금) 구청장은 구유평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라 구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은 구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구청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등록보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권리의 활용가치, 실용신안의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제15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해당 심의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